

인 권

우리 법률 중에서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는

“인권이란 「대한민국헌법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” 고 정의하여

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

의미한다는 점을 명시.

인권 침해

인권 또는 「헌법」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

투표권, 투표행위,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,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.

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35조의4(장기요양요원의 보호)

행 위	대 응
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· 폭행 · 상해 또는 성희롱 ·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.	업무전환
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.	보호자에게 거절 의사 기관에 보고 조치요청 제공 금지.
-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-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	기관 행위 금지

인권침해의 유형

- **(폭언)**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,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
- **(폭행)**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
- **(성희롱·추행)** 부적절한 언어·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

유형	내용
공포심 불안감 유발	▪ ‘가만 두지 않겠다’거나 ‘회사에 알려 찔리게 하겠다’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
폭력	▪ 때리거나,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▪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,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▪ 꼬집거나 핍박하는 경우 /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▪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
성추행 성적 언동	▪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▪ 가슴, 엉덩이,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▪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거나

인권침해(폭언, 폭행, 성희롱 추행 시) 대응방법

대응방법	내용
(1단계) 자제요청 및 주시경고	▪ 폭언(고성, 욕설, 모욕, 협박, 성희롱 등)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,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.
(2단계)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	▪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, 녹화를 실시한다.
(3단계) 응대종료, 경찰신고	▪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,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함을 설명하고,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. ▪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도보고 하고, 6하원칙에 의거, 문서로 작성한다. (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)

안녕하세요.

호누림요양원입니다.

‘어르신들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입니다’를 다시금 새겨보면서,
어르신들을 섬기는 직원들의 「인권보호」 관련하여
폭언, 폭행,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을 내용

안내드립니다.

늘 호누림요양원에 협조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호누림 원장 드림.

(URL)

[**https://docs.google.com/document/d/1tkhtww5H_WI**](https://docs.google.com/document/d/1tkhtww5H_WI)

[**FgM_asRYM0QteN-**](#)

[**4HiOCap6F8wIQT2rY/edit?usp=sharing**](#)